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업무상 질병 여부 판단에 추정의 원칙 적용 >

■ 이용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563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업무상 질병 여부 판단에 추정의 원칙 적용	2
※ 참고자료	7
1.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령 별표3)	7

I. 제안경위

2025년 10월 13일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2025년 10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부는 고시 등을 통해 근골격계 질환, 뇌·심혈관계 질환, 정신질환, 직업성 암 등의 질병에 대해 업종과 종사 기간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추정하는, 이른바 ‘추정의 원칙’을 도입하여 산업재해보상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법률상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임.

이에 업무상 질병 재해에 대한 추정의 원칙을 시행하고 이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현행법에 마련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산업재해보상을 실현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업무상 질병 여부 판단에 추정의 원칙 적용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상당기간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의 업무상 질병의 인정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37조의2(업무상 질병의 인정 특례) ①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상당기간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질병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질병명,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한 기간 및 그 밖에 업무상 질병의 추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37조와 시행령 제34조는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시행령 제34조는 근로자가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제1항제3호) 내지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제2항제1호) 등을 업무상 질병의 인정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참고자료 별표와 같음.

그런데 업무 관련성을 의학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심의 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재해근로자에 대한 보상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지기 어려움에 따라,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명백한 일부 질병의 경우 현행법 시행령·시행규칙, 고용노동부 고시 및 근로복지공단 공단규정을 통해 업무 관련성 입증 요건을 완화하여 인정함으로써¹⁾, 재해근로자의 입증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②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과 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한다.

1. 진폐
2. 이황화탄소 중독증
3. 유해·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나타나는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등의 질병
4. 영 제1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진찰을 한 결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매우 높다는 소견이 있는 질병
5. 제22조 각 호의 기관에 자문한 결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인정된 질병
6. 그 밖에 업무와 그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질병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판정위원회의 심의 제외 질병) 규칙 제7조제6호에서 “업무와 그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질병”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9조에 따른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한 질병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제3항 별표 3 제7호차목에 따른 소음성 난청
3. ~ 4. (생략)

부담을 경감하고,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소요되는 심의 시간을 단축하여 권리구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²⁾

예컨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제2호(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 라목 3) 별표1에 따라, 용접공, 배관공 등 건설업종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며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작업력이 있는 근로자가 신체부담업무를 중단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경추간판탈출증으로 상병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이 경우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도 제외되는 것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6호,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제6호).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 시행령·시행규칙, 고용노동부 고시 및 근로복지공단 공단규정을 통해 업무관련성의 입증 요건을 완화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업무 관련성의 추정을 법률 문언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신속한 산업재해보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개정안과 같이 일정한 경우에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추정하게 되면 현행보다 재해근로자의 업무관련성 입증 부담이 경

5. 영 제34조제3항 별표 3 제6호바목·사목, 제9호가목·다목, 제12호바목·사목에 해당하는 질병

6.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시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 다목 1) 및 제2호(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 라목 3) 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

7. 영 제34조제3항 별표 3 제4호 신경정신계 질병 중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8. 영 제34조제3항 별표 3 제10호 직업성 암 중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다만, 특정 요소가 그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바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기준 충족 여부와 별도로 업무와 발병한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감되고, 신속한 산업재해보상이 가능하게 되며, 의학적·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재해근로자의 보험급여 수급가능성이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다만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추정한다는 문언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이 “근로자의 질병에의 이환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그 질병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이환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라고 정하였던 것과 유사한 문언이기는 하나, 「공무원 재해보상법」³⁾, 「군인 재해보상법」⁴⁾의 추정 규정에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이라는 문언이 없이 “공무상 재해로 추정한다”라고만 정하고 있어 법률 조항의 문언으로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근골격계 질병 등 일부 질병에 대한 업무관련성 추정 적용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나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이라는 표현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3)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의2(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공무수행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한다. 이 경우 질병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질병명, 공무원의 직종,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재직한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4) 「군인 재해보상법」 제4조의2(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군인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질병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질병명,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한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등의 사례에서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고 “추정”의 의미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한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 직종·상병, 유해인자 등에 대해서도 전문가 및 노·사 의견 수렴을 통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보완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38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 Diisocyanate), 메틸렌 디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Methylene Diphenyl Diisocyanate), 헥산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Hexamethylene Diisocyanate)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예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구리 등의 금속분진(fume)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분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코사이벽 궤양·천공

차. 불소수지·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크실렌·스티렌·시클로헥산·노말헥산·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4. 신경정신계 질병 (내용 생략)

5. 림프조혈기계 질병 (내용 생략)

6. 피부 질병 (내용 생략)

7. 눈 또는 귀 질병 (내용 생략)

8. 간 질병 (내용 생략)

9. 감염성 질병 (내용 생략)

10. 직업성 암 (내용 생략)

11. 급성 중독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 (내용 생략)

12.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내용 생략)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